# 재심판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5. 16. 2007구합31966]



## 【전문】

- 【원 고】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2008. 5. 2.

#### 【주문】

1

-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7.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7부해320호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 【이유】

- 1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1은 1987. 3. 2.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남가람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6. 9. 28. 원고 조합으로부터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이며, 참가인 2는 2000. 10. 9. 원고 조합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상봉지점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0. 9. 원고 조합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고, 참가인 3은 2000. 11. 21. 원고 조합에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본점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1. 21. 원고 조합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
- 나. 참가인들은 2006. 12.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33,234/부노54,55호로 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그리고 위 각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3. 9. 위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받아들여 '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부당인사처분임을, 위 각 근로계약 해지는 각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 원고 조합은 참가인 1에 대한 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참가인 2, 3을 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2007. 4. 12.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32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한편 참가인들은 2007.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105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7. 24. 원고 조합과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구제 부분에 한하여서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유]

## 1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1은 1987. 3. 2.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남가람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6. 9. 28. 원고 조합으로부터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이며, 참가인 2는 2000. 10. 9. 원고 조합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상봉지점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0. 9. 원고 조합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고, 참가인 3은 2000. 11. 21. 원고 조합에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본점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1. 21. 원고 조합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
- 나. 참가인들은 2006. 12.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33,234/부노54,55호로 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그리고 위 각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3. 9. 위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받아들여 '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부당인사처분임을, 위 각 근로계약 해지는 각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 원고 조합은 참가인 1에 대한 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참가인 2, 3을 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2007. 4. 12.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32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한편 참가인들은 2007.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105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7. 24. 원고 조합과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구제 부분에 한하여서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 [이유]

### 1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1은 1987. 3. 2.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남가람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6. 9. 28. 원고 조합으로부터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이며, 참가인 2는 2000. 10. 9. 원고 조합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상봉지점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0. 9. 원고 조합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고, 참가인 3은 2000. 11. 21. 원고 조합에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본점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1. 21. 원고 조합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
- 나. 참가인들은 2006. 12.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33,234/부노54,55호로 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그리고 위 각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3. 9. 위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받아들여 '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부당인사처분임을, 위 각 근로계약 해지는 각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고 조합은 참가인 1에 대한 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참가인 2, 3을 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2007. 4. 12.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32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한편 참가인들은 2007.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105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7. 24. 원고 조합과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구제 부분에 한하여서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